

광혜원의 개원과 제중원으로서의 개칭과정

이경록·박윤재·여인석·박형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1. 머리말
2. 광혜원의 개원과정
3. 광혜원의 명칭제정과 관리과건
4. 제중원으로서의 개칭
5. 맺음말

1. 머리말

역사학은 본질적으로 해석의 학문이다. 선행하는 이전 사회의 존재양식과 발전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에 연원한 현 사회의 존재원리를 보다 깊이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이전 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을 충실히 재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이해없이 제대로 된 의미 부여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史實)의 복원은 역사연구의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광혜원 설립을 전기로 하여 조선에는 서양의학의 도입이 본격화된다. 갑신정변을 직접적인 계기로 하여 설립되었지만 그 근저에는 서양의학을 수용할만한 내부 여건이 조성되고 있었으며, 조선인 의사의 양성 즉 서양의학의 토착화를 광혜원 설립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다. 서양의학은 현재 도도한 강물을 형성하고 있으며 주요한 발원처의 하나가 광혜원이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광혜원을 통한 서양의학의 도입은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광혜원과 후신인 제중원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적지 않게 축적될 수 있었던 것도 설립 자체가 지니는 역사성과 그 성공적인 결과를 배경으로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 광혜원의 설립과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많다. 그것은 물론 연구자들의 역사인식의 차이에 중요한 원인이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원인은 이 시기의 자료가 완전하게 남아있지 않은데다가 기존 연구에서는 이들 자료를 단편적으로 이용하는데 있다. 본문에서 서술하듯이, 이 시기의 자료들은 시기와 내용에서 서로 상충되는 것들이 적지 않다. 각각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가능한 한 합리적인 결론을 끌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광혜원의 설립에서 제중원으로 개칭되는 과정을 충실하게 복원하고자 한다. 이 시기는 병원설립안의 제안날짜를 기점으로 하면 4달 정도이며 광혜원의 개원을 기점으로 하면 2주일 남짓 되는 기간이다. 여기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져있는 자료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배치하면서 합리적인 재구성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충되는 또는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자료들을 서로 비교 분석하고, 아울러 기존 연구들에 대한 검토까지 시도하였다.¹⁾ 자료에 나타나는

모든 날씨는 편의상 양력으로 환산하여 표기하고 음력을 병기하였다.

2. 광혜원의 개원과정

조선에 부임한지 3개월밖에 안된 알렌(H. N. Allen)은 1884년 12월 갑신정변의 와중에서 부상을 입은 민영익의 치료를 담당하게 되었다. 외과술을 통해 서양의학의 장점을 유감없이 보여준 알렌은 성공적으로 치료를 마치면서 서양의학을 시술하는 병원의 필요성을 조선정부에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이른바 알렌의 ‘병원건설안’이었다.

병원건설안은 『알렌의 일기』 1885년 1월 22일자(음력 고종 21년[1884] 12월 7일)에 처음 보이는데,²⁾ 포크(George C. Foulk) 대리공사의 적극적인 추천서신과 알렌의 병원건설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병원건설안은, 갑신정변 이래 많은 환자를 치료하였지만 적절한 치료시설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는 형편이므로 병원을 건설하게 되면 치료와 의학교육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리라는 내용으로 알렌은 무보수로 병원의 책임을 맡고 조선정부에서는 병원운영의 필요경비만을 부담하도록 하자는 운영원칙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은 지연되어 포크의 서신과 알렌의 병원건설안이 조선정부에 접수된 것은 1월 27일(음력 고종 21년[1884] 12월 12일)이었다.³⁾

2월 16일(음력 고종 22년[1885] 1월 2일)에 국왕은 병원의 설치를 준비할 사람을 임명했다고 알렌에게 알렸다.⁴⁾ 이 사람은 바로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이하에서는 외아문(外衙門)으로 줄임)의 독판(督辦) 김윤식(金允植)으로 추정된다.

2월 18일(음력 1월 4일)에 외아문 독판 김윤식은 미국공사관을 방문하여 병원설치안에 대한 조선정부의 답신을 전달했으며,⁵⁾ 알렌은 2월 20일 답신의 영역(英譯) 사본을 포크공사를 통해 받았다.⁶⁾ 답신의 전문은 알려져있지 않은데,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일기』와 『The Foreign Missionary』에 내용이 간략하게 수록되어있다.⁷⁾ 그 내용은 병원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병원이 설립되면 백성들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하고, 병원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집 한 채를 마련하였으므로 외무대신과 알렌이 이 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조처해달라고 요청하고 소요 비용의 마련에 대해서는 다시 통보하겠다는 것이다.

- 1) 기존의 연구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 편찬위원회, 197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 이광린, 1986, 「제중원 연구」, 『한국개화사의 제문제』, 일조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백년 편찬위원회, 1986, 『의학백년』; 이만열, 1989, 「한말 미국계 의료선교를 통한 서양의학의 수용」, 『국사관논총』 3; 서울대학교 병원, 1993, 『서울대학교병원사』; 기창덕, 1995, 『한국근대의학교육사』, 아카데미아; 신용하, 「광혜원과 근대의료의 출발」(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995, 『종두의양성소 규정 공포 100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신동원, 1995, 「공립의원 제중원」, 『한국문화』 16; 주진오, 1997, 「서양의학의 수용과 제중원 - 세브란스」, 『연세의사학』 제1권 제3호.
- 2) H. N. 알렌, 김원모 역, 1991, 『알렌의 일기』, 단국대학교 출판부, 1885년 1월 22일자. 여기에서 다루는 자료의 대부분은 이 글의 부록에 정리되어 있으므로 기사의 전체 내용이나 원문은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 3) 『미원안(美原案)』, 규장각 18046의 1; 『미안(美案)』, 규장각 17733과 규장각 18047;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일기(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日記)』 규장각 17836; 『알렌의 일기』 등의 1885년 1월 27일(음력 고종 21년[1884] 12월 12일) 기록.
- 4) 『알렌의 일기』 1885년 2월 16일자.
- 5) 『알렌의 일기』 1885년 2월 18일자.
- 6) 『알렌의 일기』 1885년 2월 20일자.
- 7)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일기』 규장각 17836, 1885년 2월 18일(음력 1월 4일); 『The Foreign Missionary』 1885년 5월호.

3월 1일(음력 1월 15일) 알렌은 병원으로 이용하기로 한 고(故) 홍영식(洪英植)의 집을 방문하여 가재(家財)를 정돈하였다.⁸⁾

3월 11일(음력 1월 25일)에는 외아문에서 병원설치에 대한 국왕의 재가를 얻었다. 『한성주보(漢城周報)』에 의하면, 3월 11일(음력 1월 25일)에 ‘외아문에서 폐하의 뜻을 받들어 병원을 재동(齋洞) 서쪽에 새로 만들고 이름은 제증원(濟衆院)이라 하고 관원을 두고 ……[設濟衆院 今年正月二十五日에 統理衙門에서 聖諭를 奉하야 病院를 齋洞西邊에 棚建하고 院號는 濟衆이라 하고 官員를 設하며 ……]’라고 되어있다.⁹⁾ 여기에서 3월 11일이 무슨 날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뒤에서 보듯이 병원의 명칭이 확정된 날은 4월 12일이며 관리가 임명된 날은 4월 21일이다. 그렇다면 3월 11일은 국왕의 재가가 떨어진 날이거나 병원을 새로 만든 날일 것이다. 『알렌의 일기』에 의하면 3월 11일 이전부터 병원은 설치되기 시작하였고 4월초에 완공되었다. 따라서 3월 11일은 ‘외아문에서 폐하의 뜻을 받든 날’ 즉 국왕의 재가가 떨어진 날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2월 18일 김윤식의 공문을 보면 국왕의 재가가 이미 내려진 듯도 한데, 그렇다면 국왕이 병원의 설치를 준비할 사람을 임명했다고 알려진 2월 16일이 재가가 내려진 날일 수도 있다. 재가날짜에 대한 이견이 있는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기록인 『한성주보』에 근거하여 국왕의 재가날짜를 3월 11일로 추정하고자 한다.¹⁰⁾

3월 27일(음력 2월 11일)에 병원건물은 거의 완공단계였으며,¹¹⁾ 3월 31일(음력 2월 15일)의 기록에 의하면 병원은 다음날인 4월 1일(음력 2월 16일)에 완공될 예정이었다.¹²⁾

4월 3일(음력 2월 18일)에 외아문에서는 오늘부터 재동(齋洞)의 병원에서 알렌을 맞이하고 학도(學徒)와 의약(醫藥)의 여러 도구들도 함께 갖추고 치료를 시작한다고 사문(四門)과 종각(鍾閣)에 게시했다.¹³⁾ 그러나 『알렌의 일기』에 진료기록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과 학도의 모집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인 것으로 보아, 공식적으로 개원하거나 실제적으로 치료를 시작한 것은 아니고 다만 공고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⁴⁾

같은 날 외아문은 테시코(Teshiko)¹⁵⁾가 작성한 12조의 병원규칙을 알렌에게 통보하였다.¹⁶⁾ 테시코가 작성한 병원규칙은 4월 3일 이전에 작성되었으며 외아문을 통해 알렌에게 통보된 것이 4월 3일이라고 보인다. 병원규칙은 관리과건, 학생교육, 병원운영규정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알렌을 고용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조선정부의 ‘병원’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인 것이다. 병원규칙을 근거로 하여 조선정부에서는 관리를 파견할 수 있게 되었는데, 파견관리에 대한 인사는 4월 21일(음력 3월 7일)에 결정되었다. 아울러 학생교육에 대한 규정 역시 병원규칙에 실려있는데 본격적으로 학생의 선발과 교육이 시도된 것은 이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나서였다. 한편 『한

8) 『알렌의 일기』 1885년 3월 1일자.

9) 『한성주보』 2호 1886년 2월 1일자(음력 1885년 12월 28일).

10) 이광린, 앞의 글, 116-117쪽에서도, 『한성주보』의 기록에 근거하여 국왕의 재가날짜를 3월 11일로 보고 있다.

11) 『알렌의 일기』 1885년 3월 27일자.

12) 『알렌의 일기』 1885년 3월 31일자.

13)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일기』 규장각 17836, 1885년 4월 3일(음력 2월 18일).

14) 『고종시대사』에서는 4월 3일(음력 2월 18일)을 재동에 광혜원을 설치한 날이라고 적고 있다(국사편찬위원회, 1968, 『고종시대사』 2권, 720쪽, 1885년 4월 3일(음력 2월 18일)).

15) 김원모 역, 『알렌의 일기』에서는 이 인물을 Teshika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이광린에 의하면 이 인물의 이름은 Teshika가 아니라 Teshiko이며, 일본인 의사 우미세 도시오(海瀨敏行)를 가리킨다고 한다(이광린, 앞의 글, 120쪽).

16) 『알렌의 일기』 1885년 4월 3일자.

성주보』에도 14조의 공립의원 규칙이 실려있는데¹⁷⁾ 『알렌의 일기』에 실려있는 병원규칙과 그 구성이 흡사하다.

병원에서 실제로 치료를 시작한 것은 4월 9일(음력 2월 24일)이었다. 『알렌의 일기』 1885년 4월 10일자에 의하면 “병원은 어제(4월 9일) 개원했다. 외래 환자는 20명이었고, 절단수술이 필요한 3명의 환자는 아직까지 수술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되어있다.¹⁸⁾

그러나 공식적으로 개원을 한 날짜는 4월 10일(음력 2월 25일)이었다. 알렌의 「1차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이 근대식 병원은 1885년 4월 10일에 하등의 예식없이 개원되었다’고 되어있고¹⁹⁾ 『THE KOREAN REPOSITORY』에는 ‘1885년 4월 10일에 시작된 1차년도 보고서’라고 되어있으며,²⁰⁾ 『THE KOREA MISSION FIELD』에서는 ‘병원은 공식적으로 1885년 2월 25일(양력 4월 10일-필자)에 개원’하였다고 하고²¹⁾ 포크공사의 미국무성에 대한 보고에서는 ‘비공식적인 것이었기는 하나 병원의 문을 연 것은 약간 가벼운 환자를 치료한 2월 25일(양력 4월 10일-필자)이었다’²²⁾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들에 의거하면 4월 10일이 광혜원의 공식 개원일이다. 무엇보다도 병원설립의 당사자였던 알렌이, 자신의 일기에서 4월 9일을 진료개시일로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보고서에서는 4월 10일을 개원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뒷받침하는 자료는 없지만, 조선정부와 알렌(및 미국 선교본부)사이의 합의한 원래의 개원날짜는 4월 3일이어서 외아문에서 개원공고까지 하였는데 개원일이 미루어져 4월 10일로 재조정된 것 같다.²³⁾ 그러므로 알렌의 공식보고서와 알렌의 재정지원을 맡은 선교본부측의 여러 기록에서는 공식적인 개원일을 4월 10일로 설정했을 것이다. 한편 『THE KOREA MISSION FIELD』에서 ‘공식적으로 개원하였다’는 기록과 포크공사의 ‘비공식적인 개원’이라는 표현은 서로 배치되는데, 이것은 기록자가 처한 입장 차이가 아닐까 싶다. 4월 10일에 조선정부 관리들이나 미국공사관 직원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개원식이나 축하연은 없었다. 당시 대리공사였던 포크의 기록은 이러한 점에서 ‘비공식적인 개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조선정부의 기록에서 4월 10일에 대한 기록이 빠진 것은 의아스럽지만, 조선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개원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였다. 병원의 공식적인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병원에 파견될 관리 역시 임명조차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4월 10일에 개원했다는 여러 기록에도 불구하고, 광혜원의 개원일을 언제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²⁴⁾ 광혜원을 조선정부와 알렌으로 대표되는 미국선교부사이에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성립된 기관으로 이해한다면, 개원일을 설정하는 지표는 조선정부 특히 국왕의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진 시점과 알렌이 실제로 진료를 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17) 『한성주보』 2호 1886년 2월 1일자(음력 1885년 12월 28일)).

18) 『알렌의 일기』 1885년 4월 10일자.

19) 「First Annual Report of the Korean Government Hospital, Seoul, under the care of H. N. Allen & J. W. Heron, For the year Ending April 10th, 1886」(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백년 편찬위원회, 앞의 글, 21쪽에서 재인용).

20) 「THE BEGINNINGS OF MEDICAL WORK IN KOREA」, 『THE KOREAN REPOSITORY』 1892년 12월호.

21) 「SEVERANCE HOSPITAL MEDICAL COLLEGE. GRADUATING EXERCISES.」, 『THE KOREA MISSION FIELD』 제4권 제7호(1908년 7월). 여기에 나오는 2월 25일은 음력이며, 양력으로 환산하면 4월 10일이다, 이것은 이광린, 앞의 글, 118쪽에서 이미 지적되었다.

22) Foulk to the Secretary of State, 1885년 5월 30일자(이광린, 앞의 글, 118쪽에서 재인용).

23) 이광린, 앞의 글, 119-121쪽에 의하면, 외아문에서 병원규칙을 알렌에게 통보하면서 개원해도 좋다고 하였으나 알렌이 준비부족을 내세워 4월 10일에 개원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24) 이에 대해서는 신동원, 앞의 글, 200-205쪽에 잘 정리되어있다.

시점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외에도 개원식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나 광혜원이라는 명칭의 확정, 조선정부측의 관리과건을 통한 광혜원에 대한 관여 등도 고려할 만한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문제는 광혜원의 설립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조선정부와 알렌으로 대표되는 미국선교부사이의 이해관계의 일치라는 광혜원 설립의 성격에 주목하여, 조선정부측의 결정과 알렌의 진료 및 공식보고서 작성시점을 두 가지 기준으로 삼는다. 조선정부에서 병원설립에 공식적으로 동의한 것은 2월 18일(음력 1월 4일)이며 국왕의 재가는 3월 11일(음력 1월 25일)로 보인다. 알렌의 진료 시작은 4월 9일(음력 2월 24일)이며 선교본부에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알렌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개원시점은 4월 10일(음력 2월 25일)이었다. 그러므로 이들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시키는 날을 개원일로 ‘설정’한다면 광혜원의 개원일은 4월 10일(음력 2월 25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광혜원의 명칭제정과 관리과건

‘광혜원’이 병원의 공식적인 명칭으로 확정된 것은 4월 12일(음력 2월 27일)이었다. 병원 명칭이 정해진 날짜에 대한 기록은 모두 4가지가 있다.

A. 4월 12일(음력 2월 27일), 『비변사등록』 1885년 4월 12일(음력 2월 27일)

을유년(고종 22년[1885]) 2월 27일, 의정부에서 “혜민서·활인서의 두 부서가 이미 혁파되어 국가에서 (백성을) 널리 구제하는 뜻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별도로 일원(一院)을 설치했으니, ‘제증원(濟衆院)’이라고 부르도록 하십시오. 외아문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당상관(堂上官)·낭관(郎官)의 임명 및 일체의 사무는 모두 외아문에서 간단히 보고하여 재가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비답(批答)을 통해 윤허하였다.

B. 4월 13일(음력 2월 28일), 『알렌의 일기』 1885년 4월 13일(음력 2월 28일)

새 병원의 이름은 광혜원 즉 ‘미덕을 베푸는 개명(開明)된 집’이라는 뜻이다.

C. 4월 14일(음력 2월 29일), 『고종실록』과 『일성록』

『고종실록』 1885년 4월 14일(음력 2월 29일)

(고종 22년[1885] 2월) 29일, 의정부에서 “혜민서·활인서의 두 부서가 이미 혁파되어 국가에서 (백성을) 널리 구제하는 뜻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별도로 일원(一院)을 설치했으니, ‘광혜원(廣惠院)’이라고 부르도록 하십시오. 외아문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당상관(堂上官)·낭관(郎官)의 임명 및 일체의 사무는 모두 외아문에서 간단히 보고하여 재가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윤허하였다.

『일성록』 1885년 4월 14일(음력 2월 29일)

(을유년, 고종 22년[1885] 2월) 29일 별도로 일원(一院)을 설치하여 광혜원(廣惠院)이라 부르도록 하고 외아문에서 완전히 담당하도록 하였다.

의정부에서 “혜민서·활인서의 두 부서가 이미 혁파되어 국가에서 (백성을) 널리 구제하는 뜻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별도로 일원(一院)을 설치했으니, ‘광혜원(廣惠院)’이라고 부르도록 하십시오. 외아문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당상관(堂上官)·낭관(郎官)의 임명 및 일체의 사무는 모두 외아문에서 간단히 보고하여 재가를 청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니, 윤허하였다.

D. 4월 21일(음력 3월 7일), 『(외아문)초기 (外衙門)草記』 규장각 19487, 1885년 4월 21일(음력 3월 7일)

“이제 광혜원(廣惠院)이 설치되었으니 관원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임 봉사(奉事) 박준우, 전임 사사(司事) 신낙균·성익영, 유학(幼學) 김규희·전양목을 주사(主事)로 임명했으니, 외아문의 임명보고에 대해 윤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아뢰니, 윤허하였다.

같은 날

의정부에서 “혜민서·활인서의 두 부서가 이미 혁파되어 국가에서 (백성을) 널리 구제하는 뜻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별도로 일원(一院)을 설치했으니, ‘제중원(濟衆院)’이라고 부르도록 하십시오. 외아문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당상관(堂上官)·낭관(郎官)의 임명 및 일체의 사무는 모두 외아문에서 간단히 보고하여 재가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아뢰었다.

A와 C는 같은 내용인데 수록한 자료가 다를 뿐이다. 해당 날짜가 서로 다르다면 두 날짜 가운데 잘못 기록된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다. D 『(외아문)초기』는 제목과는 다르게 모든 사항을 그때 그때 치밀하게 일지로 작성한 것이 아니며, 기록이 영성하여 나중에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자료는 두 가지 사안을 수록하고 있는데, 기사의 수록에 있어서 외아문의 인사안에 대한 재가 다음에 외아문에 인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외아문의 인사안에 대한 재가가 떨어진 것이 4월 21일이라는 것은 다른 기록과 일치하므로,²⁵⁾ 외아문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두 번째 기록은 이전에 결정된 사안을 4월 21일에 잘못 삽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B 『알렌의 일기』가 당시의 상황을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4월 13일에 알렌이 새로운 병원의 이름이 광혜원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병원의 이름은 그 이전에 결정되었을 것이다. 병원 명칭에 대해 알렌은 그 성격에 주안한 ‘왕립병원’[His Corean Majesty's Hospital]이라는 명칭을 제안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병원명칭을 조선정부측에서 결정했다면 그 날짜는 알렌이 알기 하루 전인 4월 12일이며, 알렌은 통보받은 광혜원이라는 명칭을 4월 13일자 일기에 기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광혜원이라는 명칭은, 『비변사등록』의 기록대로 4월 12일에 의정부의 명칭건의를 국왕이 윤허하여 확정된 것이며 C와 D의 기록은 수록한 날짜의 착오일 것이다. 만약 광혜원 명칭이 4월 14일에 결정되었다면, 알렌은 결정되기 이전인 4월 13일에 이미 광혜원 명칭을 알고 있었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다만 『비변사등록』에 ‘제중원(濟衆院)’이라고 기록된 것은 나중에 개칭된 제중원이라는 명칭을 소급해서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병원 명칭이 정해진 날짜만을 따지도록 하고 개칭에 따른 명칭의 혼동은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광혜원이라는 명칭이 정해진 4월 12일(음력 2월 27일)은 광혜원의 관할에 대한 조선정부의 입장이 정해진 날이기도 하다. 이것은 앞의 A 『비변사등록』에 의해 알 수 있다. 이 기사에서 수록하고 있는 내용은 두 가지 즉 병원 명칭의 확정과 병원 관할관서의 결정이다.²⁶⁾ 의정부의 건의에 따라 그동안 병원설립을 추진한 외아문에서 광혜원을 행정적으로 관할하고 당랑(堂郎) 관리의 임명·과건 및 병원운영 역시 담당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외아문에서는 아직까지 관리가 없던 광혜원에 과건할 관리를 선발하는 절차를 밟게 되었다.

그런데 C 『고종실록』의 기록에 의거하여 4월 14일(음력 2월 29일)을 광혜원의 개원일로 보는 견해가 있다.²⁷⁾ 그 근거는 ‘4월 14일이 병원설립에 대한 국왕의 재가가 떨어진 날’이라는 것이다.

25)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일기』 규장각 17836 ; 『승정원일기』 ; 『(외아문)초기』 규장각 19487 등의 1885년 4월 21일(음력 고종 22년 3월 7일) 기록.

26) 원문인 ‘另設一院 以濟衆稱號’는 ‘별도로 일원(一院)을 설치했으니, 제중원이라고 부르자’는 해석과 ‘별도로 일원(一院)을 설치하도록 하여 제중원이라고 부르자’라는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국왕이 늦어도 2월 16일에는 병원설립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외아문 독판 김윤식이 이미 병원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던 조선정부측의 사정을 감안하여 앞의 해석을 따른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고종실록』의 기록은 4월 12일의 기사를 4월 14일에 잘못 수록한 것이다. 그리고 국왕의 재가는 광혜원이라는 명칭과 외아문의 관할에 대한 것이지 병원설치에 대한 것이 아니다. 만약 병원설치에 대한 재가로 본다면, 그동안 외아문에서는 임의로 병원건설을 추진하고 설치비용을 지급했으며 알렌은 국왕의 재가를 얻기 전에 치료를 하고 공식보고서 작성을 시작한 셈이 된다. 아울러 『한성주보』에 실린 ‘올해 1월 25일(양력 1885년 3월 11일)에 통리아문에서 폐하의 뜻을 받들어 병원을 재동(齋洞) 서쪽에 새로 만들고 ……」라는 기사와도 상충된다. 따라서 다른 기록과 비교하지 않고 4월 14일을 광혜원의 개원일로 보는 견해는 설득력이 부족하다.²⁸⁾

4월 21일(음력 3월 7일), 외아문에서는 파견관리의 선정을 마치고 그 인사에 대한 윤험을 받았다.²⁹⁾ 동부승지인 윤홍선이 외아문의 인사내용을 보고하자, 전임 봉사(奉事) 박준우 등을 광혜원 주사(主事)로 임명하는 것을 국왕이 재가한 것이다. 외아문에서는 3일 뒤인 4월 24일(음력 3월 10일)에도 사포서(司圃署)의 전임 사령 3명을 광혜원 관리로 보임시켜 파견했다.³⁰⁾ 이제 광혜원은 알렌의 치료와 조선정부의 관리파견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모두 갖추고 본격적으로 궤도에 진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관리가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한 것 같지는 않다. 아직 본격적으로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자료에 빈번하게 나오는 제증원 주사의 교체 기사나³¹⁾ 1894년 제증원 운영권의 이관을 둘러싼 자료들에³²⁾ 의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4. 제증원으로서의 개칭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조선정부에서는 ‘광혜원’이라는 명칭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곧이어 ‘제증원’으로서의 개칭이 뒤따랐다.

먼저 ‘광혜원(廣惠院)’ 명칭이 사용된 자료를 다시 검토해보자.³³⁾ 광혜원이라는 명칭이 처음

27) 서울대학교 병원, 앞의 글, 53쪽 ; 신용하, 앞의 글, 6쪽. 신동원은 4월 15일을 개원일로 잡고 있다. 4월 14일에 국왕의 재가를 받고 다음날인 4월 15일 조출한 개원식을 하였으므로 4월 15일이 국왕의 재가, 선포식, 진료활동의 모든 요소를 갖춘 완벽한 광혜원 개원일이라는 것이다(신동원, 앞의 글, 200-205쪽). 주진오는 4월 10일설과 4월 15일설 모두 객관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하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주진오, 앞의 글, 6쪽). 그런데 신동원의 논리전개에는 약간의 착오가 있다. 알렌의 「1차년도 보고서」에서 4월 15일에 조출한 개원식을 했다는 기록은 『조선의보』 제1권 제78호(조선의보사, 1947)에 실린 최동(崔棟)의 번역문에 의거하고 있다. 그러나 최동이 번역한 ‘1885년(일본 명치 18년) 4월 15일에 별로 평강히 차리지도 않고 개원(105쪽)하게 되었다는 구절은 날짜를 잘못 번역한 것이다. 알렌의 「1차년도 보고서」는 최동의 번역문 외에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백년 편찬위원회, 앞의 글, 21-24쪽에도 실려 있고, 공간되지는 않았지만 이만열의 번역본도 있다. 아직 1차년도 보고서 원문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번역문에 의하면 문제의 ‘4월 15일’ 구절이 바로 ‘4월 10일에 특별한 의식없이 개원했다’는 구절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4월 15일에 개원식을 했다는 구절이 없는 것이다.

28) 국왕의 재가가 떨어진 날에 대해, 기존의 연구를 염두에 두면서 다시 정리한다면 다음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1. 병원건설안이 조선정부에 접수된 1월 27일(음력 고종 21년[1884] 12월 12일)에서 외아문 독판 김윤식이 답신을 보낸 2월 18일(음력 고종 22년[1885] 1월 4일)까지의 어느 시점(특히 2월 16일 이전)일 수 있고, 2. 『한성주보』에 실린 기사에 주목한다면 3월 11일(음력 1월 25일)일 수 있으며, 3. 『비변사등록』의 기록을 국왕 재가 기사로 본다면 4월 12일(음력 2월 27일)일 수가 있다. 현재 국왕의 재가가 떨어진 날이 언제인지는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한성주보』에 근거하여 3월 11일로 이해하고자 한다.

29)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일기』 규장각 17836 ; 『승정원일기』 ; 『외아문초기』 규장각 19487 등의 1885년 4월 21일(음력 고종 22년 3월 7일) 기록.

30)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일기』 규장각 17836, 1885년 4월 24일(음력 3월 10일).

31) 신동원, 앞의 글, 211-212쪽에 일부가 정리되어있다.

32) 「제증원 역사 관련 자료 정리」, 『연세의사학』 제2권 제1호, 1998 참고.

33) 이 글에서 다루는 시기에 ‘광혜원’이라는 명칭이 나오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알렌의 일기』 1885년 4월 13일자(음력 2월 28일)에서 “새 병원의 이름은 광혜원 즉 ‘미덕을 베푸는 개명(開明)된 집’이라는 뜻

나오는 것은, 『알렌의 일기』 1885년 4월 13일자(음력 2월 28일)에서 “새 병원의 이름은 광혜원 즉 미덕을 베푸는 개명(開明)된 집이라는 뜻이다”라는 기록이다. 그런데 『비변사등록』에 의하면, 하루 전인 4월 12일(음력 2월 27일)에 의정부에서 별도로 일원(一院)을 설치하여 제중원(濟衆院)이라고 부르자고 하니, 윤허했다고 한다. 이 기사는 그 내용으로 보아 새로 설립한 병원에 대한 것이 확실하고 아직 제중원으로 개칭되기 전의 기사이므로 ‘제중원(濟衆院)’이라는 표현은 ‘광혜원(廣惠院)’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을 기록한 『고종실록』과 『일성록』의 경우 ‘광혜원’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서도 이것은 다시 확인된다. 즉 『비변사등록』의 ‘제중원’이라는 표현은 나중의 정리과정에서 나타난 기록상의 착오이다. 그렇다면 ‘광혜원’의 첫 사용은 4월 12일(음력 2월 27일)이라고 할 수 있다. 광혜원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이전에는 단지 ‘병원’(Hospital, 施醫院)이라고만 지칭했다. 4월 24일(음력 3월 10일)까지 몇 차례에 걸쳐 광혜원이라는 표현이 보이며, 이틀 뒤인 4월 26일(음력 3월 12일)에는 외아문에서 ‘광혜원(廣惠院)을 제중원(濟衆院)으로 개칭하자’고 건의했다. 그 이후에는 광혜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중원 개칭과 관련된 기사는 다음의 5가지이다.

A. 4월 12일(음력 2월 27일)에 ‘의정부에서 별도로 일원(一院)을 설치하여 제중원(濟衆院)이라고 부르자고 건의하여 윤허’한 기사가 있다.³⁴⁾ 그러나 같은 내용을 기록한 『고종실록』과 『일성록』에서는 ‘광혜원(廣惠院)’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비변사등록』의 기록은, ‘별도로 일원(一院)을 설치하여 광혜원(廣惠院)라고 부르자고 하니’라 하여 제중원을 광혜원으로 바꾸면 완전한 기록이 된다.

B. 4월 21일(음력 3월 7일)에 ‘이제 제중원(濟衆院)이 설치되었으니 관원을 두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전임 봉사(奉事) 박준우 등에 대한 외아문의 임명보고에 대해 윤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는 기사가 있다.³⁵⁾ 그러나 같은 내용을 기록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일기』에서는 원문에 ‘광혜원(廣惠院)’이라고 기록하고 ‘제중원(濟衆院)으로 개부표(改付標)했다’는 단서를 달고 있어 이날까지도 광혜원이 정식명칭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다음에 보이는 C 『(외아문)초기』에서도 같은 기사를 수록하면서 광혜원이라고 기술하고 있다.³⁶⁾

C. 그리고 같은 날인 4월 21일(음력 3월 7일)에, “이제 광혜원(廣惠院)이 설치되었으니 관원을

이다”는 기사, 2. 『고종실록』과 『일성록』의 4월 14일(음력 2월 29일)에서, “의정부에서 ‘일원(一院)을 설치하여 광혜원이라고 부르자’고 하니, 윤허”한 기사, 3.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일기』 규장각 17836, 4월 21일(음력 3월 7일)에서 “제중원으로 개부표(改付標)했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이제 광혜원이 설치되었으니 관원을 두지 않을 수 없으므로, ……’”라고 아뢰는 기사, 4. 『(외아문)초기』 규장각 19487, 4월 21일(음력 3월 7일)에서 “광혜원이 설치되었으니 관원을 두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전임 봉사(奉事) 박준우 등에 대한 외아문의 임명보고에 대해 윤허하자”라고 아뢰는 기사, 5.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일기』 규장각 17836, 1887년 3월 24일(음력 고종 24년[1887] 2월 30일)에서 “대령서리(待令書吏)의 보고에 의거하면, 제중원은 원래 광혜원으로 1885년 4월 21일(음력 3월 7일)에 창설되었음이 외아문 『초기』[本衙門草記]에 기록되어 있다”는 기사, 6.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일기』 규장각 17836, 1885년 4월 23일(음력 3월 9일)과 다음날인 4월 24일(음력 3월 10일)에 각각 쌀을 광혜원에 보내고 사포서(司圃署)의 전임 사령 3명을 광혜원 관리로 파견한다는 기사, 7. 『고종실록』 권22 1885년 4월 26일(음력 고종 22년 3월 12일)에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광혜원을 제중원으로 개칭하자’고 아뢰는 기사 등이다.

34) 『비변사등록』 1885년 4월 12일(음력 고종 22년 2월 27일).

35) 『승정원일기』 1885년 4월 21일(음력 고종 22년 3월 7일).

36) 제중원으로의 개칭날짜가 4월 21일(음력 3월 7일)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광린, 앞의 글, 121-123쪽에서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일기』에서 ‘개부표(改付標)’ 기사가 수록된 4월 21일이 바로 개칭날짜라고 정리하고 있다. 신동원, 앞의 글, 206쪽 ; 주진오, 앞의 글, 6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광린의 설명을 받아들이고 있다. 참고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백년 편찬위원회, 앞의 글, 24쪽에서는 4월 23일이 개칭일이라고 하였는데 근거가 없는 설명이다.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같은 날 의정부에서 ‘…… 별도로 일원(一院)을 설치했으니, 제증원(濟衆院)이라고 부르도록 하십시오. 외아문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당상관(堂上官)·낭관(郎官)의 임명 및 일체의 사무는 모두 외아문에서 간단히 보고하여 재가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아뢰었다.”는 기사가 있다.³⁷⁾ 여기에서는 광혜원과 제증원의 두 가지 표현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외아문에서 ‘제증원’을 관할하도록 하자는 두 번째 건의는 『비변사등록』에 의하면 4월 12일(음력 2월 27일)에 이미 결정된 것이며 기록 순서에 있어서도 외아문의 인사안에 대한 재가 다음에 외아문에 인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두 번째 건의 부분은 나중에 잘못 삽입된 기사로 보이며, ‘제증원’이라는 표현 역시 『(외아문) 초기』를 나중에 정리하면서 소급하여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D. 1887년 3월 24일(음력 고종 24년[1887] 2월 30일)에 “대령서리(待令書吏)의 보고에 의거하면, ‘제증원은 원래 광혜원으로 1885년 4월 21일(음력 고종 22년[1885] 3월 7일)에 창설되었음이 외아문 『초기』[本衙門草記]에 기록되어 있다’……”는 기사가 있다.³⁸⁾ 그러나 이 기록은 외아문에 보존되어 있는 서류 가운데 ‘제증원’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오는 기록 즉 C의 날짜를 찾은 것에 불과하다. 제증원(또는 광혜원)이 4월 21일(음력 3월 7일)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다.

E. 실제로 제증원으로 명칭이 바뀐 것은 『고종실록』에 실린대로 4월 26일(음력 3월 12일)에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광혜원(廣惠院)을 제증원(濟衆院)으로 개칭하자”고 아뢰는 때이다.³⁹⁾ 제증원으로의 개칭문제에 있어서는 주무부서인 외아문의 기록이 가장 믿을만 할 것이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일기』를 살펴보면, 4월 21일(음력 3월 7일)의 이른바 ‘개부표(改付標)’ 기사에서도 원문은 ‘광혜원’이라고 되어있다. 즉 당시까지는 광혜원이라고 불렀으며 나중에 개칭되자 찌지[箋]를 덧붙인 것이다.⁴⁰⁾ 원본을 살펴보면, 이 기사는 광곽(匡郭) 위쪽 여백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일에 수록하지 못하고 나중에 삽입한 기사라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4월 23일(음력 3월 9일) 기사에서는 전해청에 공문을 보내 광혜원에 쌀을 보내도록 하고, 4월 24일(음력 3월 10일)에서는 사포서(司圃署)의 전임 사령 3명을 광혜원 관리로 파견하는 등 광혜원(廣惠院)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제증원(濟衆院)’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사용되는 것은, 앞의 『고종실록』에 실린 제증원으로의 개칭날짜에서 하루 지난 4월 27일(음력 3월 13일)이다.⁴¹⁾ 다시 말하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일기』의 기록이 4월 26일을 기점으로 광혜원에서 제증원으로 바뀌는 것과 『고종실록』의 개칭건의는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의 ‘개부표(改付標)’는 개칭된 4월 26일(음력 3월 12일) 이후에 이루어졌을 것이고, 다른 자료들에 나오는 ‘제증원’이라는 표현은 개

37) 『(외아문)초기』 규장각 19487, 1885년 4월 21일(음력 고종22년 3월 7일).

38)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일기』 규장각 17836, 1887년 3월 24일(음력 고종 24년[1887] 2월 30일).

39) 『고종실록』 권22 1885년 4월 26일(음력 고종 22년 3월 12일). 기창덕과 신용하는 『고종실록』의 기록에 근거하여 개칭일은 4월 26일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기창덕, 앞의 글, 30쪽 ; 신용하, 앞의 글, 8쪽).

40) 개부표(改付標)에 대해 『한국한자어사전』 2권(단국대 동양학연구소 편찬, 단국대 출판부, 1993) 628쪽에는 ‘한 번 계하(啓下)한 문서에 일부분을 고쳐야 할 점이 있을 때, 다시 임금의 재가를 받기 위하여 그 고칠 자리에 누린 찌지를 붙임’이라고 되어있다.

41) (을유년 고종 22년[1885] 3월) 13일 …… 해영(海營)과 기영(箕營)에 공문을 보냈다. ‘제증원(濟衆院)에서 여병원(女病院)을 함께 세웠으니 13세에서 16세 사이의 기녀(妓女) 가운데 총명한 사람 2-3명을 특별히 선발하여 이 곳(제증원)으로 올려 보내 의술(醫術)을 익히게 하라는 것이었다’ …… (乙酉三月)十三日 …… 關海營箕營 濟衆院并設女病院 另擇妓女中 自十三歲 至十六歲 聰明穎悟者二三名 知委上送于該院 以爲肄習醫術事 ……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일기』 규장각 17836, 1885년 4월 27일(음력 고종 22년 3월 13일).

칭된 이후 자료를 정리하면서 소급하여 기술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4월 26일(음력 3월 12일) 이전에 ‘제중원’이라고 기록된 A 『비변사등록』, B 『승정원일기』의 기록은 나중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개칭된 제중원이라는 표현을 소급 적용한 것이고, C 『(외아문)초기』는 낱짜를 착각하여 잘못 삽입된 기사로서 역시 제중원이라는 표현을 소급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D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일기』는 C 『(외아문)초기』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광혜원이라는 명칭은 4월 12일(음력 2월 27일)에 사용되기 시작하여 제중원으로 개칭된 4월 26일(음력 3월 12일)까지 2주일 동안 사용되었다.

제중원이라는 명칭은 조선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알렌의 입장에서 병원의 명칭은 광혜원이든 제중원이든 그리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⁴²⁾ 알렌이 의도했던 것은 조선정부 또는 조선왕실의 도움을 받아 서양의학을 시술할 수 있는 병원의 건설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를 기반으로 선교사업을 펼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개칭에 대해 『고종실록』에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광혜원을 제중원으로 개칭하자”고만 되어있어 개칭의 취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몇가지 설명만이 제시되고 있는 상태이다.⁴³⁾ 당시 조선정부가 취했던 입장이 근대로의 전화를 지향한 것이라는 역사인식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여기에서는 과도기 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을 제기하고자 한다.

『한성주보』 2호 1886년 2월 1일(음력 1885년 12월 28일)에서는 제중원의 위상에 대해 “이것은 곧 국가의 인정(仁政)을 베푸는 한 단서요 또한 널리 민중을 구제하는 공덕(功德)……[이는 곧 國家에 發政施仁하는 一端이요 또한 博施濟衆하는 功德…….]”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발정시인(發政施仁)’과 ‘박시제중(博施濟衆)’은 전통적으로 대민정책의 주요한 방침이었다. 이 두 표현은 『맹자(孟子)』와 『논어(論語)』에 각각 나오는데, 이들은 모두 국가가 백성에게 인정(仁政)을 베푼다는 의미로 이전부터 널리 사용되었던 표현들이다.

제(齊)나라 선왕(宣王)이 물었다. “이른바 왕도정치[王政]에 대해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맹자(孟子)께서 대답하셨다. “옛날에 주나라 문왕이 기(岐) 땅을 다스릴 때에 농부는 수확의 1/9만을 세금으로 납부했고 관리에게는 사촌까지 녹(祿)을 지급했으며 국경과 시장에서는 감독하기만 할 뿐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고 백성들의 못·어랑(魚梁) 이용을 금지함이 없었으며 형벌은 처자식에게 미치지 않았습니다. 늙어 부인이 없는 사람을 ‘홀아비[鰥]’라고 하고 늙어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寡]’라고 하며 늙어 자식이 없는 사람을 ‘무의탁자[獨]’라고 하고 어려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고아[孤]’라고 하니 이 네 부류는 하소연할데 없는 천하의 궁박한 사람들입니다. 문왕이 정치를 베풀어 인정(仁政)을 펼침에 반드시 이 네 부류를 먼저 배려했습니다. 『시경(詩經)』에서도 ‘부자들은 괜찮지만 이 외로운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했습니다.”⁴⁴⁾

공자(孔子)의 제자인 자공(子貢)이 물었다. “만약 백성에게 널리 베풀고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인정(仁政)[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어찌 인정(仁政)에 비견하겠느냐, 반드시 성정(聖政)[聖]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요(堯)임금과 순(舜)임금께서도 오

42) H. N. Allen, 『Medical Work in Korea』, 『Foreign Missionary』 1885년 7월호에서는 병원을 헤민서[Hay Min So, or 'House of Civilized Virtue']라고도 지칭하고 있다.

43) 이광린, 앞의 글, 123쪽 ; 신동원, 앞의 글, 206쪽 ; 주진오, 앞의 글, 6쪽 참고.

44) 王曰 王政可得聞與 對曰 昔者 文王之治岐也 耕者九一 仕者世祿 關市譏而不征 澤梁無禁 罪人不孥 老而無妻曰鰥 老而無夫曰寡 老而無子曰獨 幼而無父曰孤 此四者 天下之窮民而無告者 文王發政施仁 必先斯四者 詩云 哿矣富人 哀此殍獨(『맹자(孟子)』 권2 양혜왕장구하(梁惠王章句下)). 발정시인(發政施仁)이라는 표현은 『맹자(孟子)』 권1 양혜왕장구상(梁惠王章句上)에서도 나오는데, 인정(仁政)을 베풀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귀의한다는 내용이다.

려 (제대로 행하지 못할까) 근심하셨던 것이다.”⁴⁵⁾

‘발정시인(發政施仁)’과 ‘박시제중(博施濟衆)’은 그 자체가 전근대에서 통용되는 하나의 이념이었다. 국가 혹은 지배층이 주체가 되어 환과고독(鰥寡孤獨)을 진휼하고 질병을 치유한다는 ‘시혜정책(施惠政策)’은 전근대 국가에서 표방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정책이었던 것이다. 『한성주보』에 나타나는 제증원에 대한 인식 역시 이러한 시혜의 성격을 다분히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도는, 과탄지경의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있는 자는 누구나 내원하여 치료를 받으라. 약값은 국가에서 지급한다. …… 치료 어려운 질병이 있는 자는 모두 내원하여 치료받아 국가에서 널리 구제하고자 하는 뜻에 부응”하라는 4월 3일의 외아문의 게시에서도 이미 읽을 수 있다. 여기에 광혜원을 해민서와 활인서의 맥을 잇는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조선정부의 인식을 감안한다면, 광혜원의 설립과 제증원이라는 명칭에는 조선정부의 전통적인 의료정책이 어느정도 녹아들어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당시 조선정부가 개혁에 대해 취했던 동도서기(東道西器)의 입장이 투영된 것으로도 이해가 가능하다. 조선정부의 입장에서 ‘광혜원’은 근대화를 추구하는 측면과 봉건적인 성격을 완전히 탈각하지 못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과도기를 거치는 조선에서 의료분야 역시 기존의 전통과 새로운 조류의 영향을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에서 광혜원의 설립과 제증원으로서의 개칭과정에 대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였다. 이 과정은 조선정부와 알렌으로 대표되는 미국선교본부가 주체가 되어 새로운 병원을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다. 이를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알렌의 병원건설안은 1885년 1월 22일(음력 고종 21년[1884년] 12월 7일)에 만들어졌으며, 1월 27일(음력 고종 21년[1884] 12월 12일)에 조선정부에 접수되었다. 2월 16일(음력 고종 22년[1885] 1월 2일)에는 병원설립을 준비할 관리(김윤식)가 임명되었고, 2월 18일(음력 고종 22년[1885] 1월 4일)에 외아문 독판 김윤식은 답신을 보내 병원건설안에 대한 수용을 공식적으로 통보했으며, 3월 11일(음력 1월 25일)에 외아문에서는 국왕의 재가를 얻었다. 김윤식의 답신 이후 병원은 홍영식의 집에 점차 설치되었으며 4월 초에는 완공되었다. 4월 3일(음력 2월 18일)에 외아문에서는 오늘(음력 2월) 18일부터 재동의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한다고 사문(四門)과 종각(鍾閣)에 게시했으나, 공식적으로 개원하거나 실제적으로 치료를 시작한 것은 아니고 다만 공고였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외아문은 데시코가 작성한 12조의 병원규칙을 알렌에게 보냈다. 병원규칙을 근거로 하여 조선정부에서는 관리를 파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의학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4월 9일(음력 2월 24일)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하였으며, 4월 10일(음력 2월 25일)에 공식적으로 개원하였다.

4월 12일(음력 2월 27일)에는 ‘광혜원’이 병원의 공식적인 명칭으로 확정되었으며, 광혜원의 행정적 관할과 관리 파견에 대한 인사권을 외아문에 위임하였다. 4월 21일(음력 3월 7일)에 외아문에서는 파견관리의 선정을 마치고 그 인사에 대한 윤험을 받았으며, 4월 24일에도 사포서(司圃

45) 子貢曰 如有博施於民 而能濟衆 何如 可謂仁乎 子曰 何事於仁 必也 聖乎 堯舜 其猶病諸(『논어(論語)』 권 6 용야편(雍也篇)).

署)의 전임 사령 3명을 관리로 파견했다. 이제 광혜원은 알렌의 치료와 조선정부의 관리파견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모두 갖추고 본격적으로 궤도에 진입한 것이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곧이어 4월 26일(음력 3월 12일)에 ‘제중원’으로의 개칭이 뒤따랐다.

‘제중원’이라는 명칭 자체에는 조선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성주보』에 기록된 제중원의 위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때, 그것은 국가 또는 지배층이 주체가 되어 빈민을 진휼하고 질병을 치유한다는 ‘시혜정책(施惠政策)’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무료로 환자를 치료한다는 4월 3일의 외아문의 기사나 광혜원을 혜민서와 활인서의 맥을 잇는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조선정부의 인식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광혜원의 설립과정과 ‘제중원’이라는 명칭에는 조선정부의 전통적인 의료정책이 일정하게 준용(遵用)되고 있었다. 근대로의 전화를 모색하던 과도기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의료분야에서도 투영되고 있었던 것이다.